C - 93 - 2013

7.3 우물통 운반 및 거치

- (1) 제작된 우물통을 운반할 때 운반 장비에 의한 잡아매기, 들기, 운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한다.
- (2) 크레인을 이용한 우물통 본체 및 조금구 연결 작업 시 본체 내부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3) 조금구와 체결된 우물통 본체를 크레인으로 인양할 때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않아야 한다.
- (4) 제작된 우물통을 운반할 때에는 우물통의 중량 및 크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성능을 갖는 크레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고리걸이 계획에 따른 와이어로프, 조금구, 크레인의 정격하중 등의 안전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 (5) 우물통 본체를 인양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 위치까지 거치시 작업신호를 일원화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 (6) 우물통의 인양, 운반, 거치공사 시 충분한 인양능력을 가진 크레인을 투입하고 조금구를 사용하여 우물통 들고리에 동일한 하중이 분배되도록 한다.
- (7) 인양 및 운반 과정 중 우물통 본체 및 기타 부재의 넘어짐, 무너짐, 맞음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8) 수상 및 해상에서 들고리 체결을 위해 우물통 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육상에서 크레인을 이용 하여 우물통 상부로 올라가는 때에는 떨어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 (9) 우물통 거치 시 급격한 조류에 의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우물통 이동방